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2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1월 17일

발 의 자: 이은림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박성연, 봉양순, 서상열,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성배, 이영실,
이종환, 최민규, 황철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소방기관의 급식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력, 시설 등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소방기관 근무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무자들의 사기 증진과 본연의 소방 사무에 집중하여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방기관, 근무자, 급식환경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에게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다.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 및 급식제공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토록 함(안 제5조)
- 마.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바. 그 밖에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소방학교·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조대를 포함한다)·119특수구조단·시민안전체험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원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지원
3. 인력 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의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내식당 급식환경 및 운영 개선에 대한 개선사항
2.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소속 근무자의 만족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지원사업)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활동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4조	소방활동지원 (붙임1)	29,977,700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1] 2025년 서울시 소방활동지원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위 치 : 소방재난본부 및 25개 소방서 등
- 규 모 : 소방공무원 7,436명 등
- 사업기간 : 2025.01 ~ 2025.12.
- 사업내용 : 비상출동대기급식지원, 특정업무경비, 관사 운영 등
- 2025년 사업비 : 29,977,700천원(급식지원의 경우 4,224,000천원)

☐ 2025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9,977,700	
비상출동대기급식지원	2025.01~2025.12	4,224,000	매월 집행
특정업무경비	2025.01~2025.12	25,325,040	매월 집행
소방재난본부 관사 운영	2025.01~2025.12	1,188	관사 난방료 매월 집행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2025.01~2025.12	28,800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지급
소통활동비	2025.01~2025.12	386,672	소방공무원 소통 활동비
관사임대료	2025.01~2025.12	12,000	관사 임대료 지출